

대구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단24918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16. 1. 19.

판결 선고2016. 2. 4.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대구 동구 D 임야 9,680㎡ 중 별지 도면 표시 8, 41, 42, 43,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블록조단층주택 양철지붕 21㎡'를 철거하고,
나. 위 임야 9,680㎡ 중 별지 도면 표시 9, 26 내지 40,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8㎡를 인도하고,
다. 1,2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D 임야 9,680㎡ 중 별지 도면 표시 8, 41, 42, 43,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블록조단층주택 양철지붕 21㎡를 철거하고, 위 임야 9,680㎡ 중 별지 도면 표시 9, 26 내지 40,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8㎡를 인도하고, 1,2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동구 D 임야 9,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6.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6. 6. 16. 소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9. 12. 2.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9. 12.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미등기 건물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건물에 관하여 1999. 4. 6. 피고 C, 2014. 5. 14. 피고 B, 2015. 11. 14. 다시 피고 C이 소유권 명의인으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2.부터 2015. 5. 11.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200,000원(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차임 상당액 월 100,000원×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 B에게서 피고 C에게로 재이전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 C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주성화

별지